



2024년 계약직 전문의 모집공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충남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임상교육, 진료, 연구, 공공의료를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과 미래를 함께 할 열정 가득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은 블라인드 채용에 근거하여 모집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 및 수집하고 있으며, 채용의 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01. 채용개요

가. 모집내용

근무지	직급	소속 및 분야	인원	자격요건
세종	전문계약 1등급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필수]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의사 면허증 소지자 2.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취득 예정자

나. 임용조건

- 근무형태 : 협의 후 결정 (교대 및 당직근무시 해당스케줄에 따름)
- 임용예정일 : 채용 후 협의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이며,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 급여 : 병원 내규에 의함

다. 공통응시자격

- 응시의 제한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본 공고문 최하단 6page 참고)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에 한함.
(단,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라. 우대사항

구분	대상자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3%

-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02. 전형절차



※ 면접 예정일 : 지원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별도 공지)

0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4. 26.(금) ~ 모집 완료시까지

나. 접수방법 : 병원 채용정보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채용정보센터 주소 : <https://cnuhinsa.recruiter.co.kr>
- 응시원서 작성은 ‘크롬’ 브라우저 사용 권장
- 로그인 후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작성
- 원서접수 완료 후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최종제출** 클릭

다. 접수시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인터넷으로 업로드

채용분야	필수제출서류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응급의학과 전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면허증 •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자격취득예정자는 추후 제출) • (남성에 한함)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및 재직증명서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등) • 기타 면허(자격)증 (분과전문의 등)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지원자격에 미달되는 경우, 면접응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 기간 내에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증복지원은 불가하며, 기간 미준수·기재착오·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마감시간이 임박해서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5. 자기소개서 문항 중 무의미한 반복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이 없는 경우 필기(면접)시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오며, 사전에 준비하여 주십시오.**
7. 경력사항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한 이력을 의미하며, 해당 경력의 근무기간, 부서, 담당업무 등을 상세히 기재하십시오.
8. 여러 서류를 한 항목에 등록할 경우 **한 파일로 압축 또는 편집하여 업로드 바랍니다.**
9. 서류에 개인정보(주민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 업로드가 불가하오니, **인적사항 삭제 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10. **가점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해당 항목에 서류를 등록해야 하며, 만약 기타서류항목 등 다른 항목에 등록할 경우 가점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1. **이력서에 직무관련 자격, 경력 등을 기입한 경우 관련서류를 반드시 등록하여 주십시오.**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유의사항

- 증빙서류 제출시 **성명을 제외한 학교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은 가려서 업로드**
- **자기소개서 내용 중 성명, 경력기관명**은 작성을 금지하며, 간접적으로 본인확인 가능한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 **이력서 상의 경력사항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음.
- 주소 기재 시 **출신학교가 드러나는 주소**(OO대학교 기숙사 등) 사용금지
- E-mail 기재 시 **출신학교가 드러나는 메일 주소** 사용금지
- 기타 등록된 개인정보는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되며, 평가자에 제공되지 않음

4. 최종합격자 사정

- 가. 면접심사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나. 면접위원 3분의 2 이상이 “양(4점)” 이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다. 채용신체검사 결과 병원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 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산점 안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장애인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필수 제출 – 가점비율 및 제출처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 다만, 가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면접전형시 면접위원 2/3 이상 "하" 또는 "양" 평정인 대상자도 가점은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을 준용함.

○ 우대사항이 중복일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5. 최종 임용

가. 최종합격 시에는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예정일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다만, 병원 및 합격자 사정에 따라 임용일은 일정기간 내 협의조정 가능

나. 최종합격자는 채용후보자명부 순서에 따라 발령 예정으로 개인별 임용일은 상이할 수 있음.

다.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2년까지이며, 병원이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로 인한 임용취소,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사 등을 대비하여 2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마. 최종임용 시 면허(자격)증 등 구비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바. 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채용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원서접수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위조일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사.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 아. 최종합격(신규임용)자는 인사관리 상 지원직무 외 타 직무 또는 야간 근무를 할 수 있으며,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 자. 병원 사정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해 대전본원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3)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부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6) 채용신체검사 결과지 1부
 - 7) 급여통장 사본 1부
 - 8) **원서접수 시 업로드한 제출서류 일체** (블라인드처리하지 않은 원본)
 - 9) 기타 어학성적 및 자격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 민간기관(사단법인, 협회) 자격증,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등은 제외

06. 근무여건

- 가.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적용
- 나. 법인회원 휴양시설 이용
- 다.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 라. 진료비 감면혜택 등

07. 기타사항

- 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내부규정 및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임용규정 등에 의하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누락,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채용과정에서 인사청탁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제출하는 등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전형단계 및 점수에 관계없이 전형에서 제외하며,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병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관련된 부정행위자가 병원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함.

-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별지 제3호서식' 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전자우편(메일주소 : sjinsa@cnuh.co.kr) 또는 팩스(044-995-4109) 등으로 제출할 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수신자 **부담으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라. 불합격자 중 채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지사항의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 채용 관련하여 중복 및 유사질문이 많으므로 본 채용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그 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채용담당자(**☎ 044-995-4123**) 또는 채용정보센터 내 [Q&A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응시자격사유 (인사규정 제2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삭제
11. 전염병질환자 또는 육체적 ·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채용에 합격한 부정합격자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4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